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

목 차

< 요약 >

I. 검토배경	1
II. 면세점 특허제도 정책 변화	2
1. 면세점 특허제도의 연혁	2
2. 면세점 특허제도의 1차 개편('13년)	6
3. 면세점 특허제도의 2차 개편('16년)	7
III.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11
1.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11
2. 과도한 사회적 비용 소모와 탄력적 대응 곤란	12
3.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	12
IV. 면세점 특허제도의 개선 방안	14
1. 근본 대책	14
1) 면세점의 진입장벽 완화	14
2) 면세점을 관광 인프라 산업으로 육성	15
2. 단기 대책 :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 개선	16
1) 특허수수료 개선	16
2) 신규특허 심사 시,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 폐지	16
3) 특허갱신 요건의 명확화	19
4)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완료	20
< 참고문헌 >	21

- 이 자료는 본회 규제개혁팀 이제희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58 FAX : 02-6234-5347 E-mail : jehee@fki.or.kr

요 약

<정책 동향>

- 면세점은 구 관세법 개정을 통해 '79년 특허사업으로 법제화되었고, '80년대에는 특허를 적극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
 - '80년대에는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면세점 특허를 적극 부여하고, 갱신은 밀수 등 면세점 특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허용
 - 시내면세점은 '89년 29개까지 증가하였지만 '90년대에는 면세점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철수로 면세점 수가 11개('99년)까지 감소
- '11년 이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에 소극적이어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
 - '11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 면세점 매출 등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정부는 '15년까지 신규특허를 허용하지 않았음
 -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10년 4.5조원에서 '12년 6.3조원으로 급증하자 면세점 사업이 대기업 독점 특혜사업이란 주장이 대두
- 면세점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특허기간 단축, 갱신 제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개정('13년)
 - 면세점은 대기업 독점으로 운영되면서 낮은 특허수수료 규정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제도 변경
 -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은 사실상의 자동갱신제에서 경쟁 입찰제로 변경되었으며, 특허수수료도 매출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 '15년 변경된 제도를 적용한 결과,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갱신 실패, 신규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기존 면세점의 특허갱신 실패로 해당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 기존 투자에 대한 회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
 - 신규면세점도 면세점의 한시적 특허기간(5년)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브랜드의 유치에 있어 협상력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
-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 갱신 허용 등의 대책을 발표('16년)했으나 신규사업자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 유지

-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환원하고 갱신을 허용했으나 진입장벽 완화에 대해서는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이라는 대책만을 발표
- 면세점의 신규특허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정책의 예측가능성 저하는 물론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예상됨

<문제점>

□ 면세점 제도에 대한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독과점 규제 등이 면세점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면세점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변경하고('13년),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기존의 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
- 면세점 사업자는 법인세 납부, 상생협력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매출액에 연동하는 이익 환수적 특허수수료 산정으로 3중과세의 상황에 직면
-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신규 특허심사 시, 감점)는 면세점 시장을 국내로 한정해 독과점을 판단한 오류가 있음

<개선방안>

□ 면세점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

-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사업자 선정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면세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신규면세점이 안착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 단기적으로 특허수수료, 독과점 규제의 합리화 필요

-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하며,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해서는 안 됨
- 면세점은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만큼 신규특허 심사 시,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한 독과점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

□ 면세점 산업을 핵심 관광 인프라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 면세점 사업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한류를 확산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관광 인프라
-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세점 경쟁력 유지 및 특성화 전략 필요

I 검토배경

- 시내면세점 독점 완화와 중소기업과의 상생 명분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단축되고, 특허갱신은 자동갱신에서 경쟁입찰제로 변경('13년)
 - 면세점 사업은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특혜사업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제도 변경
 -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기존 사업자의 특허기간 만료 시, 갱신을 불허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 변경제도 시행 후, 기존 사업자의 입찰 탈락, 신규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15년)
 -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갱신 실패에 따른 사업 철수로 기투자에 대한 회수 곤란, 근로자의 고용 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한시적인 사업기간에 다른 적극적인 투자 곤란, 명품 브랜드에 대한 유치 협상력 저하 등으로 신규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도 심화
-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 갱신 허용 등 기존의 정책으로 회귀를 발표하였으나, 신규특허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불만을 초래('16년)
 -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 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해서는 '15년에 이어 '16년에도 추가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15년 신규진입 사업자들의 불만을 초래
- 본 보고서에서는 면세점 특허제도와 정부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면세점 특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면세점을 관광산업의 인프라로 인식하고 집중적인 육성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면세점 정책이 필요

II 면세점 특허제도 정책 변화

1. 면세점 특허제도의 연혁

□ '79년 구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제도 법제화

- 구 관세법에서 특허보세구역을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면세점)으로 규정하며 면세점 제도를 법제화
 - * 이에 따라 동화면세점('79년), 롯데면세점('80년) 등 시내면세점 개장
- 면세점 특허기간은 3년으로 하되, 면세점 특허의 취소사유(금지품 수출입죄, 관세포탈 등)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

<구 관세법 규정¹⁾>

1) 면세점 제도의 법제화

- * 제65조 :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 * 제116조의2 : ① 보세판매장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2) 면세점 사업의 특허 및 갱신

- * 제78조 (설명의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 제80조 (특허의 취소와 반입정지)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금지품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2. 1년 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 제89조 (특허기간) 보세장치장설명의 특허기간은 3년 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 '80년대에는 면세점 특허를 적극 부여함에 따라 최대 29개 운영

-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정부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운영을 적극 허용²⁾
- 이에 따라 전국의 시내면세점수는 '79년 2개에서 '89년 29개로 급증

1) [시행 1979.1.1.] [법률 제3109호, 1978.12.5., 일부 개정]

2) 김대진, 「면세점 시장의 주요이슈 점검과 시사점」, 이슈분석, 산업은행, 2015

□ '90년대에는 면세점 수익성 악화로 면세점 사업자 수가 급감

- 시내면세점은 면세점 간 경쟁, 출국장 면세점 대비 상품 구성 부족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며³⁾ 면세점 사업철수 본격화
- '90년대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내면세점은 '89년 29개에서 '99년 11개로 감소

<시내면세점 수 추이>

연도	'79	'89	'99	'09	'11	'13	'14	'15	'16.7
시내면세점	2	29	11	10	10	17	17	19	21

* 자료 : 관세청

□ 정부는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면세점의 신규특허 허용 기준을 마련

-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한 지역에 한해 필요한 경우,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기준을 마련('00년)
- 위 기준 외에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의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를 신규특허 허용 기준으로 추가('07년)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요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⁴⁾

* 제7조(특허신청의 공고) ①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면세점의 매출액 추이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2.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함)

□ 신규특허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울시내 신규특허를 불허함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발생

- '11년 이후, 현행 신규특허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정부는 서울 지역의 신규 시내면세점 개설을 15년 만인 2015년에 허용

3) 최영수, 면세점 이야기, 미래의 창, 2013

4) [시행 2015.7.1.] [관세청고시 제2015-23호, 2015.7.1., 일부 개정]

- 서울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1년 809만 명에서 '13년 984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0만 명 증가라는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충족
- 서울 지역은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청은 '14년까지 신규 면세점의 특허를 허용하지 않음
 - * 서울 이외 지역은 '12년~'13년 11개의 신규특허를 허용하였으나 5개 면세점이 특허 반납
- 면세점 매출이 '10년 4.5조 원에서 '12년 6.3조 원으로 급증하고, '12년 면세점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2개 사업자가 차지함에도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지 않아 면세점 사업에 대한 특혜 및 독과점 논란이 발생
 - 일부 정치권에서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만 낮은 특허수수료,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독점 등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
 -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면적기준에 따라 부과(연면적 10만㎡ 초과 시, 204만 원 / '13년 개정 전)
 - 면세점의 신규특허 허용은 관광객 증가 등 객관적 요건 외에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가능한 만큼 자의적 판단이 가능

<참고> 면세점 제도 개관

- **면세점은 관세법의 보세판매장으로서 외국인 입국자, 내국인 해외여행자의 관광·쇼핑 편의를 위해 관세·소비세 등을 면세하여 판매**
 - 면세점의 구입은 상품의 해외 반출 또는 해외 소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내국인은 구입한도와 면세한도(국내반입 한도)가 상이
 - * 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는 1인당 \$3,000이며(국내 상품 제외) 입국 시에는 면세점 구입상품(수입품, 국내상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상품 총액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면세점은 판매 전에 관세·소비세·주세 등에 대한 면세가 사전에 이루어져 '사전 면세점'으로 불리기도 함
- **면세점은 소재 위치, 개설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
 - 시내면세점은 서울, 부산 등의 도시에 위치하여 출국 전, 구매한도 내에서 반복적 이용 가능
 - 출국장면세점은 인천·김포국제공항, 부산항만 등에 위치, 출국 시 이용 가능
 - * 입국장면세점(공항·항만의 입국장에 설치되어 입국 시 이용 가능)은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능하며,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
 -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면세점으로 제주도의 공항·항만·시내에 위치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
- * 동 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항공기 또는 여객선으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은 연 6회, 총 60만 원 한도로 면세물품 구입 가능
- 외교관면세점에서는 「외교관계에 의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관 및 외교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여 판매
- 시내면세점 21개점, 출국장면세점 22개점, 지정면세점 5개점, 외국인면세점 1개점 등 총 49개 면세점 운영 중('16.7.31일 기준)

□ 면세점(Duty Free Store)과 별도로 사후적으로 소비세만 환급되는 면세판매장(Tax Refund Store, 일명 사후면세점)이 있음

- 면세판매장은 면세범위, 이용대상 등에서 면세점과 구분되며 관할세무서의 신고만으로 운영 가능
 - 면세점은 관세,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면세판매장은 소비세만 면제
 - 면세점은 출국 예정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면세판매장은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 가능하며, 상품의 즉시 수령이 가능

<면세점과 면세판매장의 비교>

	면세점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면세 범위	관세,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주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이용 대상	출국 예정 내국인 /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상품 수령	출국 시	즉시 수령
운영 요건 / 기간	세관장 특허 / 5년	관할 세무서 신고 / 기간제한 없음
근거 법령	관세법 / 관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2. 면세점 특허제도의 1차 개편('13년)

□ 면세점 제도 개정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12년)

- 동 개정안에서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기간 단축(5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확대,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제시
- 면세점은 대기업 독점으로 운영되고,⁵⁾ 낮은 특허수수료 규정⁶⁾으로 소수의 기업에 국가 징세권을 포기하며 특혜를 부여한다고 주장⁷⁾
 - 면세점 사업자는 낮은 특허수수료 규정으로 인해 매출액의 30만분의 1 수준만 특허수수료로 납부한다고 지적

□ 관세법 개정으로⁸⁾ 특허기간 및 갱신제도, 수수료 부과방식 변경

- 특허기간은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관세법 제176조의2 제5항)되고, 특허갱신은 사실상의 자동갱신*에서 경쟁입찰제로 변경(제176조의2 제3항)
 - * 종전에는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점의 특허갱신을 허용
- 시내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 * 면세점 특허수수료: (대기업) 매출액의 0.05%, (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 종전에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 부과
 - 출국장면세점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입찰액에 특허수수료와 건물 임대료가 포함됨

5) 위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당해연도('12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시장의 81.4%(매출 기준)를 차지
(주요 업체별 시장점유율(매출기준))

구분	'11		'12		'13		'14		'15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롯데	27,257	50.7%	32,341	51.1%	35,758	52.3%	42,170	50.8%	47,390	51.5%
신라	15,235	28.4%	19,179	30.3%	20,904	30.6%	25,376	30.5%	25,888	28.1%
JDC	3,383	6.3%	3,427	6.1%	3,450	5.0%	3,666	4.4%	4,882	5.3%
동화	2,198	4.1%	2,446	3.9%	2,090	3.1%	2,926	3.5%	3,200	3.5%
관광공사	2,243	4.2%	2,295	3.6%	2,107	3.1%	1,986	2.4%	1,110	1.2%
SK	1,513	2.8%	1,832	2.9%	1,958	2.9%	2,747	3.3%	2,874	3.1%
신세계	1,438	2.7%	1,339	2.1%	1,593	2.3%	2,602	3.1%	3,512	3.8%
전체	53,716	100%	63,292	100%	68,326	100%	83,077	100%	91,984	100%

* 자료: KIEP('16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 6)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면적기준에 따라 부과되었고, 연면적 10만㎡ 초과 시, 특허수수료는 204만 원임
- 7) 관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홍중학 의원 대표발의, '12년)
- 8) 홍중학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기초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13년 시행)

□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면세점 운영 능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면세점 사업자의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중소기업 지원방안,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 출국장면세점은 공항·항만 등에서의 면세점 운영 공간의 제약에 따라 최고 입찰가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유지

□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 비율, 갱신절차 등 우대 규정 신설

-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천억 원 및 자산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게 면세점 총 특허 수의 30% 이상 부여(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
- 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해 특허기간 만료 시, 1회 갱신을 허용 (관세법 제176조의2 제6항)

<개정 관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특허기간	10년	5년
갱신제도	자동 갱신	경쟁 입찰
특허수수료	면적 기준 부과	매출액 기준 부과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없음	- 특허 수 보장(30% 이상) - 1회 갱신 허용 - 특허수수료 차등

3. 면세점 특허제도의 2차 개편('16년)

□ 정부, 신규특허를 부여하고, 특허기간 만료 4곳에 대해 경쟁입찰 진행('15년)

-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5년 만에 서울지역에 신규 특허를 부여하고, 제주, 충남 지역에도 신규 면세점 허용
 - 서울지역은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이 신규사업자로 선정

- 정부는 '13년 변경된 면세점 제도에 따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4곳)에 대해서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기존사업자 탈락
 -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경쟁입찰 결과,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롯데(롯데월드 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면세점)가 탈락

<면세점 신규특허 / 특허만료 경쟁입찰 결과>

	기존 특허사업자	선정 기업	비고
신규특허 (5)	/	HDC신라	서울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제주
		(주)디에프코리아	충남
특허만료 경쟁입찰 (4)	SK네트웍스(주)	(주)신세계디에프	기존사업자 탈락
	(주)호텔롯데 소공점	(주)호텔롯데	
	(주)호텔롯데 월드점	(주)두산	기존사업자 탈락
	(주)신세계조선폰텔(부산)	(주)신세계조선폰텔	

□ 기존 사업자 탈락으로 인해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 노출

-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함으로써 해당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 *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 워커힐 면세점의 고용 인력은 각각 1,300명, 900명
- 롯데, SK는 특허갱신을 전제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특허갱신 실패로 기투자자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 * 롯데는 잠실 월드타워점으로서의 확장이전에 3,000억 원 SK는 워커힐 면세점 확장공사에 1,000억 원 투자

□ 신규면세점도 면세점의 한시적 특허기간(5년)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브랜드의 유치에 있어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면세점은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5년의 특허기간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되며, 이는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 수천억 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면 5년으로는 부족 → 초기투자 감소 → 경쟁력 저하
- 해외 명품은 사업기간이 한시적인 면세점의 입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신규면세점은 해외면세점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 * 면세점 경쟁력은 해외 유명브랜드 유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 면세점 사업자들의 의견

□ 정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갱신 허용 등 개선방안 발표('16년)

- 정부도 고용불안, 투자위축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면세점 개선책 마련('16.3월, 경제관계장관회의)
 -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특허기간 만료 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 허용, 특허수수료 인상 및 규모별 차등부과 등
 - 신규사업자의 면세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과점 사업자의 신규면세점 입찰 참가 시, 심사점수 감점제도 도입 등
- 정부는 '16.3월의 면세점 개선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부산, 강원 지역에 각 1곳씩 신규면세점을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16.4월)
 - *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16년 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면세점제도 개선방안('16년)>

	변경 사항	주요 내용	비고
특허기간	5년 → 10년	○ 특허기간을 개편(13년) 전과 같이 10년으로 연장	법 개정 필요
갱신제도	경쟁입찰 → 원칙적 갱신허용	○ 면세점 특허만료 시,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 허용	법 개정 필요
특허 수수료	2배 ~ 20배 인상	○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특허수수료 인상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 구간별 0.1% ~ 1.0%로 인상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기존 특허수수료율(0.01%) 유지	시행

	변경 사항	주요 내용	비고
독과점 규제	독과점 사업자 신규심사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과점 사업자(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점 신규 특허심사 시,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⁹⁾ 이외 타 면세점 사업자 또는 면세점 참여 희망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 -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배제 	시행
신규특허	신규특허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특허 여부는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16.4월 말 추가 발표 ○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부산, 강원 지역에 각각 1곳씩 면세점을 신규 허용('16.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간의 공고 절차,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16년 말 사업자 선정 	시행

*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9)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시장 전체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를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Ⅲ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1.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 면세점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하고('13년),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기존의 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 저하
 - 제도변경의 필요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기업 특혜 방지라는 정치적 주장에 따라 법을 개정('13년)
 - '13년 관세법 개정 시, 특허기간이 만료된 면세점이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발생하는 고용불안, 기존 투자회수 곤란, 재고처리 등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 특허기간 연장, 갱신 허용 등 기존 정책으로 회귀하기로 한 것은 '13년 법 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16년)
-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도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며, 면세점 탈락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 제기
 - 정부는 관광객 증가에도 면세점을 늘리지 않았다가 '15년에 이어 1년 만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함으로써 '15년 신규사업자의 반발 초래
 - '15년에 선정된 신규면세점은 입찰 당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한 만큼 신규 사업자를 바로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특수 대비를 위해 신규면세점을 추가하였다고 밝혔지만 특허갱신에서 탈락한 면세점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음
 - '15년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기존 면세점의 신규특허 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에 따른 부작용은 해결하지 못함
 - 탈락한 기존 면세점이 '16년 말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어 즉시 면세점을 개장 하더라도 폐점(워커힐 면세점 '16.5월 등) 이후, 재개장까지 최소 6개월 소요
 - 만약 탈락한 면세점 사업자가 신규입찰에서 다시 탈락하면 재개점을 위해 준비한 자원낭비,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
 - 향후에도 면세점의 신규특허 부여 여부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달린 만큼 정부 정책을 예상하기 어려움

2. 과도한 사회적 비용 소모와 탄력적 대응 곤란

□ 면세점 특허제도는 사업자 선정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 소요

- 면세점 운영 능력 외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경쟁입찰 준비에 과도한 비용 소요
 - 지역상생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설립(두산), ‘남대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 추진(신세계) 등
- 면세점 사업에 탈락 시, 입찰준비에 따른 비용의 매몰로 사회적 손실 증가
 - 면세점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전담인력, 임대계약 등의 비용 매몰

□ 사업자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 대응 곤란

- 현행 제도는 전년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전제로 관세청이 신규특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
- 관세청의 신규특허 공고, 선정 등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면세점의 브랜드 유치, 시설공사 등을 고려하면 신규공고부터 개점까지 1년 이상 소요
 - *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신규면세점의 필요 시점으로부터 면세점 개장까지 2년 소요

3.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

□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허수수료 부과

- 면세점의 법인세 납부, 상생협력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기존보다 2배~20배 인상한 것은 3중과세의 성격을 가짐
 - *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 구간별 0.1%~1.0%로 인상
- 면세점 사업은 판매 물품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질 뿐이며, 면세점 사업자는 영업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면세점 사업자는 조세 의무 외에 영업이익의 사회환원, 중견면세점 지원,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확대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 중
 - * 두산은 면세점 영업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상생형’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화는 면세점의 1개 층 전체에 100개 이상의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특허수수료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은 특허수수료가 이익환원의 성격이 아니라 행정수수료의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¹⁰⁾

10)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제12차 회의록(2012년 11월 16일)

○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 발언 내용 : “현재 보세판매장 보세구역의 특허수수료는 아시다시피 특허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세관의 보세화물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적인 성격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수수료의 성격하고 이러한 성격하고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만일 특허수수료의 부과가 면세점 이익의 환원 목적이라면 적자 면세점에 대해서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임
- 일본과 태국이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각각 정액, 면적당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2번 인상된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주요국의 면세점 특허제도 비교>11)

국가	한국	중국	말련	태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성격	경쟁입찰	사실상 국영기업 운영	국영기업, 상장회사 (자국민 70% 이상)	국영기업, 상장회사 (자국민 51% 이상)	-	-	요건 충족 시, 특허 부여
특허 기간	5년 재입찰	1년 갱신 (사실상 영구적)	-	명시사항 없음	명시사항 없음	명시사항 없음	10년 갱신
	정율	정율	정액	정액	정액	정액	면적당
특허 수수료	대기업: 매출액의 0.1~1%, 중소기업: 0.01%	매출액의 1%	2년간 RM1200 (연간 약 17만 원)	3만 바트 (약 100만 원)	A\$7,000 (약 623만 원)	S\$70,000 (약 6,134만 원)	월별 19,000~177,400엔 (연간 약 250만~2,331만 원)

□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신규 심사 시, 감점제도는 면세점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만큼 글로벌 경쟁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 정부는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여 신규면세점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
 -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도록 신규사업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
- 소비자는 자국과 여행 방문국의 면세점을 비교하여 소비하는 만큼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의 독과점 논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 * EU는 면세점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국내시장이 아닌 EU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

11) KIEP,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발표자료」, 2016. ; 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9일자, A5면. ; 노경국, 「국내외 면세산업 현황 분석」, 제주관광 이슈포커스(2015년 1월 2주), 제주공항공사, 2015.

IV 면세점 특허제도의 개선 방안

1. 근본 대책

1) 면세점의 진입장벽 완화

□ 중·장기적으로 등록제·허가제 전환 등 진입장벽 완화

- 중·장기적으로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하여 법률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점 사업을 허용해야 함
 - 면세점은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시장참여자를 정부가 결정하는 특허방식은 적절하지 않음¹²⁾
 - 시내면세점의 허가 요건은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와 서비스 질의 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면세점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¹³⁾
- 면세점은 전 산업의 평균 일자리 창출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장진입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면세점이 속한 도소매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13.7(명/10억 원)로 전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 6.4의 2배 이상 상회
 - *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 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

<면세점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10억 원)

	매출액('15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계수	-	1.788	0.832	13.7
외국인	6,129	10,959명	5,100명	69,863명
내국인	3,084	5,514명	2,566명	35,154명
전체	9,213	16,473명	7,666명	105,017명

* 매출액은 면세점협회 자료(달러 기준)를 '15년 평균 환율(1131.5원/달러)로 변환

* 자료 : 면세점협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13년 / 도소매서비스업)

12) 대기업 면세점도 경영 애로로 사업자가 바뀌는 등 면세점은 경기에 민감한 사업 : 서울 코엑스 면세점은 경영난으로 애경그룹에서 롯데로 인수되었고('10년),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도 신세계로 인수됨('12년)

13) 면세점 사업은 광업허가, 공유수면매립허가 등 다른 특허 사업과 달리 소멸성, 복구불가 등의 성격을 갖지 않아 사업자 수를 제한할 필요 없음

□ 시장 참여자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

- 진입규제 완화는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여 면세점 사업자는 물론 참여 희망 사업자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만큼 신규면세점 사업이 안착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

□ 면세점 확대 시 제기되는 면세점 공급 과잉, 해외브랜드 유치비용 증가 등의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

- 서울지역은 시내면세점 수가 2년 만에 두 배 이상('14년 6개→'15년 9개 →'16년 13개) 증가하여 진입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 과거 시내면세점 수가 '89년 29개에서 '11년 10개까지 감소한 바와 같이 경기변동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해 면세점 수가 결정됨
- 면세점 확대 시, 해외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오히려 명품 경쟁이 아닌 면세점별 특성화(한류 등)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의 시내면세점 수도 포화상태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수 증가에 따른 단기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사업자 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

2) 면세점을 관광 인프라 산업으로 육성

□ 면세점 산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세점의 경쟁력 유지 및 특성화 전략 필요

- 한국의 시내면세점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모델로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와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한국을 세계 1위의 면세점 시장으로 발전시킴
 - * 면세점 시장규모 : 한국(1위, 12.3%), 중국(2위, 7.7%), 미국(3위, 5.9%) 순
('14년 기준, 제너레이션리서치)
- 국내 출국장면세점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지만 시내면세점의 '15년 매출은 '1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며 면세점 시장의 성장을 견인
 - * 시내면세점 매출액(조원) : 2.0('11년) → 4.1('13년) → 6.2('15년)
 - * 출국장면세점 매출액(조원) : 3.0('11년) → 2.4('13년) → 2.5('15년)

- 시내면세점의 확대에 따라 면세점과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상품 특성에 맞는 면세점을 육성해 면세점별 특성화 유도 필요
 - * 한류 면세점, 지역 상생면세점, 중소기업 상생 면세점 등 특성화 가능

□ 면세점 산업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한류를 확산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 인프라 산업임은 입증된 사실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67.8%가 쇼핑을 이유로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여 한국 쇼핑환경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음¹⁴⁾
- 면세점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한류 콘서트 등)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에 따른 관광, 숙박 산업의 발전은 물론 한류 확산에 기여

2. 단기 대책 :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 개선

1) 특허수수료 개선

□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감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에 기초하여 결정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세관의 보세판매장 관리·감독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므로 면세점 감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함
 - *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총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됨¹⁵⁾
- 면세점의 핵심 경쟁 요소 중 하나가 가격경쟁력인 만큼 행정수수료로 인해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해서는 안 됨

2) 신규특허 심사 시,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 폐지

□ 신규면세점 심사 시, 독과점 사업자의 감점규정 폐지

- 면세점 시장은 국내경쟁이 아닌 세계경쟁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한 독과점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
- 면세점 이용자는 국내와 해외를 비교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면세점 시장의 범위를 주변국 또는 전 세계로 확대해 독과점을 판단해야 함

14)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선택 이유: ① 쇼핑(67.8%), ② 자연풍경(44.8%), ③ 역사유적(27.6%), ④ 패션·유행 등의 문화(23.6%) 등('15년, 복수응답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15) 김태일 외, 민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9.

□ 일본·중국 면세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국내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 저해

- 일본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한국형 시내면세점을 '16년 개장하였으며 향후 다른 도시에도 개점할 계획
- 중국은 하이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개장하였고('14년), 자국민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공항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

<일본·중국과의 면세점 경쟁>

□ 일본, 중국의 시내면세점 도입, 입국장 면세점 추가 등으로 면세점 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

- 일본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한국형 시내면세점을 벤치마킹하여 '16년 도쿄에 시내면세점을 개점하였고, 타 도시에도 개점할 계획
- 일본에서 시내면세점이 개점한 것은 '04년 오키나와 'T갤러리아'(T Galleria Okinawa) 개장 이후, 12년 만임
- * 일본의 백화점그룹 미쓰코시이세탄 홀딩스는 도쿄 긴자에 시내면세점(Japan Duty Free Ginza)을 개점하였고('16.1월), 롯데도 긴자에 시내면세점을 개점('16.3월)하고, 오사카에도 '17년 개점할 계획

<Japan Duty Free Ginza>



<롯데면세점 긴자점>



- 중국은 하이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개장하였고('14년),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 개설(항저우 등 국제공항 13곳, 항만 6곳)할 계획
- 중국은 하이난 산야에 연면적 7만㎡의 세계 최대 규모 면세점(Sanya Duty Free Store)을 개장('14. 9월)하는 등 면세점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
- 내국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하고, 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 반입 한도를 5,0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확대
- * 중국에는 시내면세점이 존재하지 않음

<하이난 산야 면세점>



□ 시장 독과점에 엄격한 EU도 면세점 시장을 국내시장이 아닌 EU시장 전체로 파악하며 세계적 면세점 사업자 간 M&A를 승인

- EU는 면세점 사업자인 듀프리(스위스)의 M&A(14년 뉘앙스, '15년 월드듀티프리)를 승인, 이를 통해 듀프리는 세계 최대 면세점 사업자로 부상
- EU는 고객의 공항별 가격 비교 등을 근거로 면세점의 국제적 경쟁관계를 인정하며 면세점의 지리적 시장을 최소한 EU시장 전체로 인정

<EU의 듀프리/월드듀티프리 기업결합 심사>¹⁶⁾

- '15년 면세점 사업자인 듀프리와 월드듀티프리가 EU에 기업결합을 신고
 - * 유럽위원회의 Merger Regulation(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에 따라 일정 기준(전 세계 연간 매출액이 50억 유로 이상의 기업결합 등)의 기업결합은 유럽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
- EU는 양사의 결합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하는 데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업결합을 승인
 - 글로벌 면세점 사업자인 듀프리(스위스)는 '14년 뉘앙스(스위스), '15년 월드듀티프리(이탈리아)를 인수하며 세계 1위 면세점 사업자로 부상
 - * 인수 전('13년 기준) 매출 순위는 듀프리 세계 2위(37억 달러), 월드듀티프리 세계 6위(28억 달러), 뉘앙스 세계 7위(23억 달러)
- 심사보고서에서 관련된 지리적 시장(relevant geographic market)은 적어도 유럽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으로 판단하며 국제적 경쟁관계를 인정
 - 고객은 EEA의 공항별 가격을 비교하는 만큼 유럽 지역의 면세점 간 상당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
 - * EU는 '08년 오토그릴(Autogrill)과 월드듀티프리(World Duty Free)간 기업결합 심사 때, 면세점의 관련 시장을 유럽경제지역 전역 또는 전 세계 시장이라고 판단
- 동 보고서는 공항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EU 이외 지역의 면세점 사업자 중, DFS, 롯데, 신라와 같이 몇 년 내, 신뢰할 만한 신규사업자로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국제적 외형을 이미 갖춘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글로벌 차원에서 면세점의 경쟁구조를 인정

16) EUROPEAN COMMISSION, 「Case No COMP/M.7622 - DUFREY/ WORLD DUTY FREE」, 2015.

3) 특허갱신 요건의 명확화

□ 밀수입 등 법률 위반이 명백히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갱신 보장

- 정부는 면세점제도 개선책에서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갱신을 허용하기로 하였지만 구체적인 갱신 요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13년 관세법 개정 전, 면세점 사업자의 밀수입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갱신을 허용한 것처럼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허갱신을 허용해야 함

□ 특허갱신 요건의 명확화는 일본과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과 높은 중국 관광객 의존 상황에서 면세점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일본의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를 추월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 격화
 - 일본은 엔화 약세, 소비세 면세제도의 확충, 유람선 입항 증가, 항공노선 확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일본 정보관광국)
- 외국인 관광객 중, 높은 중국 관광객 비중(45.2%)으로 인해 면세점은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만큼 안정적 경영환경이 필요
 - '15년 메르스 사태로 12년 만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고, 특히 메르스가 유행한 '15년 6월~8월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46.7% 감소

<한국/일본 외국인 관광객 추이>

	2013	2014	2015	중국 관광객 비중('15년)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1,218만 명	1,420만 명	1,323만 명 (△97만 명)	45.2%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36만 명	1,341만 명	1,974만 명 (633만 명 증가)	25.3%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일본 정보관광국

4)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완료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10년)을 위한 관세법 개정 필요

- 정부는 '16년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면세점의 특허기간은 관세법 규정사항으로 법 개정 필요
 - * 관세법에서 면세점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규정(제176조의2)
 -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등 10인 발의, '16.3월)이 발의되었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 국회에서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관세법의 개정이 지연될 경우, 면세점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 야당이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20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
 - * 야당은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특허기간 연장이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¹⁷⁾

17) 서울신문, 2016년 4월 19일자, 14면.

참고문헌

< 문헌 >

- 김태일 외, 민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9년.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면세점)제도 개선방안」, 2016년.
_____,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2015년.
김대진, 「면세점 시장의 주요이슈 점검과 시사점」, 이슈분석, 산업은행, 2015년.
노경국, 「국내외 면세산업 현황 분석」, 제주관광 이슈포커스(2015년 1월 2주), 제주공항공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6년.
최영수, 면세점 이야기, 미래의 창, 2013년.
KIEP,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발표자료」, 2016년.
EUROPEAN COMMISSION, 「Case No COMP/M.7622 - DUFY/ WORLD DUTY FREE」, 2015년.

< 언론 / 웹사이트 >

- 서울신문, 2016년 4월 19일자, 14면.
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9일자, A5면.
국회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
한국은행 웹사이트(<http://www.bok.or.kr/>)
한국면세점협회(<http://www.kdfa.or.kr/>)
日本政府観光局 웹사이트(<http://www.jnto.go.jp/jpn/>)